企業支配構造憲章



목 차

■ 제1장 총칙

- 제 1조 : 목적

■ 제2장 주주

- 제 **2**조 : 주주의 권리

- 제 3조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제 **4**조 : 주주의 책임

■ 제3장 이사회

- 제 5조 : 이사회의 기능

- 제 **6**조 : 이사회의 구성

- 제 **7**조 : 이사의 선임

- 제 **8**조 : 사외이사

- 제 **9**조 : 이사회의 운영

- 제10조 : 이사회의 위원회

- 제**11**조 : 이사의 의무

- 제**12**조 : 이사의 책임

■ 제4장 감사기구

- 제13조 : 내부감사기구

- 제14조 : 외부감사인

■ 제5장 이해관계자

- 제15조 : 이해관계자

- 제16조 :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 제6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제17조 : 기업경영권 시장

- 제18조 : 공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헌장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으며, 회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 터 신뢰받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정도경영의 기반아래 진취적인 기업정신 및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 주

제2조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모든 주주는 회사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제4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과 이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제7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제8조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회사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 (이사회의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일부의 이사들로 구성된 특정 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경영의 주체로서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 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 4 장 감사기구

제13조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제14조 (외부감사인)

회사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해관계자

제15조 (이해관계자)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회사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경영감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7조 (기업경영권시장)

기업인수는 기업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공시)

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No | 일 자 | 주요 제/개정 내용 | 비고(제/개정사유) |
|----|------------|------------|------------|
| 1 | 2003.07.15 | 제 정 | |
| | | | |
| ı | | | |
| ı | | | |
| | | | |
| | | | |
| | | | |
| ı | | | |
| ı | | | |
| ı | | | |
| ı | | | |
| 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